

2차 UPR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추가 로비자료

군인권센터

● 질의와 권고

질의

- 문. 군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문. 소위 "반정부 및 중북"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가?
- 문. 휴대전화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중 병이 주체가 되어 발생한 사건 비율은 얼마이며, 유출된 기밀의 등급은 각 사건별로 무엇인가?
- 문.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영창징계처분을 받은 병의 수는 얼마인가?
- 문. 군인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권고

- ▷ 군인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최대한 촉진할 것
- ▷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¹⁾를 개정할 것
- ▷ 군인사법 제47조의2를²⁾ 개정할 것

● 배경자료

1. 군은 군 기강 확립과 군사보안을 이유로 2008년 불온도서 목록을 만들었다. UN 표현의자유특보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³⁾ 그러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고, 한국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는 악화되고 있다.
2. 군은 SNS 통제를 강화해 가면서 군인이 시민으로서 가진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근거로 특히 군인이 시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금지 조치는 (1) 현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탄압하고, (2) 개인 SNS 사용을 제한하고, 건전한 비판자를 형사처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3) 휴대전화를, (4) 기타 법률이 아닌 규정과 그마저도 모호한 표현으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 표현의 자유 침해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삭제 사건

3. 2012년 1월 17일 육군 6군단 예하부대에 특정 스마트폰 어플 삭제 공문을 하달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2012년 1월 31일 군수사령부 산하 육군종합정비창에서도 하달되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2년 2월 2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어플 삭제 조치 부적절하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2012년 2월 6일 국방부 김 대변인은 어플 삭제 조치 적절하다고 번복하였고, 2012년 2월

1)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See A/HRC/17/27/Add.2, para. 99.

17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어플 삭제 조치 적절하다고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를 옹호하였다.

4. 군인권센터는 2012년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하였다. 그러자 2012년 2월 20일 육군 6군단 포병여단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800명의 소속 간부, 장교, 부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색영장도 없이 검열하였다. 군인권센터는 2012년 2월 22일 추가로 해당 사건의 직권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이미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관련 제한 규정이 없다. 이는 현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이후 정부와 대립되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사권한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중립성이 훼손한 바를 반증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2: SNS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5. 이 대위 사건: 2012년 3월 22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⁴⁾'로 기소되었다. 2012년 6월 26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거 전부를 부동의했다. 이 재판에서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사건이 신고된 날짜 이전의 트위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무사의 사찰 혐의와 수사권한이 없는 기무사의 불법 수사 혐의를 지적했다. 결국, 2012년 7월 17일 3차 공판이었던 "비공개" 공판준비기일에서 군 검찰은 이 대위의 신분조서작성 외 모든 수사를 기무사가 진행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기무사 서대위는 군사법원에 자신이 트위터 게시글을 수집했다는 내용의 '이 대위 트위터 출력 확인서' 제출하였다. 이날 변호인이 두 차례에 걸쳐 불법수사를 주도한 기무사 서 대위의 증인신청하였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채택을 기각했다. 이후 2012년 8월 2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군 검찰 징역 3년 구형했고, 결국 2012년 8월 31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기무사 사찰 혐의 및 불법 수사 혐의 모두에 대해 합법적인 "방첩" 행위였다며 면죄부를 줬다.
6. 이 중사 사건: 2012년 9월 7일 특전사 이 중사는 트위터에 10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다. 2012년 9월 25일에 1차 공판이 보통군사법원에서 시작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3: 휴대전화 제한**

7. 2012년 8월 13일 중앙일보는 몰래 채팅하고 SNS 이용하는 군인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2012년 8월 14일 국방부 24일까지 '불법'으로 소지한 휴대전화 반납 명령했다.
8. 국회의원 김형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⁵⁾에 의하면 '휴대전화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2003년 49건이었으나, 2011년 1855건으로 급증하고, 2012년 8월까지만 해도 1682건이다.

4)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김형태 의원실 <휴대전화 제한규정 위반 통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병	35	모름	1623							
장교	14	모름	61							
합	49	39	127	118	198	321	475	998	1855	1682

10년 동안의 위반자는 병이 3892명으로 전체의 91.8%였다. 이들은 징계양정의 특징상 모두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영창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폐쇄로 일관하는 방침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병들은 과도한 규제 일변도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4: 법률 외 규정과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9. 2012년 1월 31일 국방부는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발간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a)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 (b) 고민이 되는 글은 일단 게시하는 것 금지 및 글의 내용이 계속 고민되는 경우, 상관이나 정훈장교 등과 상의, (c) 콘텐츠가 이슈화되었을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히 (b)의 내용은 개인의 의사표현을 상급자에게 승인받게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을 검열하고 있으며, 개개의 병 스스로가 자기검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c)의 경우 군이 개인을 일일이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게다가 규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
10. 이것으로도 모자라 2012년 8월 12일 국방부는 ‘SNS 활용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해당 강령은 (a)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b)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하는 행위, (c)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 (b)의 내용은 군인이 군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지조차 못하게 막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에 표현된 용어의 정의가 전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
11. 이런 발상은 과도한 규제로 발전했다. 최근 발표된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기본지침'에서는 (a)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나 동영상, 전자우편을 전송,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 통신상에 게시하는 모든 행위의 규제, (b) 사석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를 화제 삼아 정치에 대한 의견 피력 제한, (c)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 지휘관의 선거운동 참여를 비롯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장병의 지지도 조사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b)에서 사석에서의 발언마저도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군인의 유권자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아예 박탈한 것이다./끝/